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설 관리기준 상향입법 및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8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0948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시설 관리기준 상향입법 및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안 제31조)	2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0948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31.
3. 회 부 일 : 2025.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시설 관리기준 상향입법 및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u>기능유지</u> 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 ----- ----- <u>기능유지를</u>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신설>	1. 제2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신설>	2.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설>	3. 항공기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소방 및 구난설비를 갖추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설>	4. 제5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공항이용객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억 5천만명 수준을 회복하였음.

【 최근 공항이용객 수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까지)
여객 수 (명)	156,347,576	64,567,998	69,502,656	92,156,651	132,698,367	151,190,121	48,392,180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항공통계 - 항공운송통계
(<https://www.airportal.go.kr/stats/transport/chartDetail2.do>)

아울러 지난 2023년,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해서 공항 혼잡 또는 다중밀집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기준에 혼잡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상 시설관리기준의 일부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공항(비행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 16 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4. 법 제 56 조 및 「항공보안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홍보안내문을 일반인이 보

상향입법하고(안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관리기준으로 명시(안 제31조제1항제2호)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공항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

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 56 조제 1 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여 해당 구역에 사람·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6. 항공기의 화재나 그 밖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공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가. 공항 및 공항 주변 항공기사고
 - 나. 항공기의 비행 중 사고와 지상에서의 사고
 -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 라. 공항의 자연재해
 - 마.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